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 증인의 전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6.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 목 차 】

I. 개 관	1
1. 조직 및 정원	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3
4. 재무결산	6
II. 검토의견	12
◆ 총괄적 검토 ◆	12
1. 내부 감찰 실효성 제고 통한 조직기강 확립 필요	12
□ 포렌식 입찰 비위 의혹 사건 및 보석의견서 미제출 사건	12
□ 내부 감찰기능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조직기강 확립 필요	13
2. 성과지표 실질화 필요	16
□ 공수처 대표 성과지표	16
□ 성과지표와 기관 임무와의 연계성 및 객관적 측정방식 제고 필요	18
3. 공수처 업무 안정성을 위한 인력확보방안 마련 필요	21
□ 행정직원 인력증원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필요	22
□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인력증원 방안 마련 필요	26
◆ 개별사업별 검토 ◆	29
4.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29

- ☐ 수사업무 통신요금 지급 개선 필요 29
- ☐ 연례적 집행부진에 대한 집행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4
- ☐ 전용 이월 등의 집행상 미비점 개선 필요 37

5.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7011-250) 40

- ☐ 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및 반복적인 비목정정 개선 필요 40
- ☐ 장애인고용의무 준수 노력 필요 44

【참고자료】 2024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공수처의 조치결과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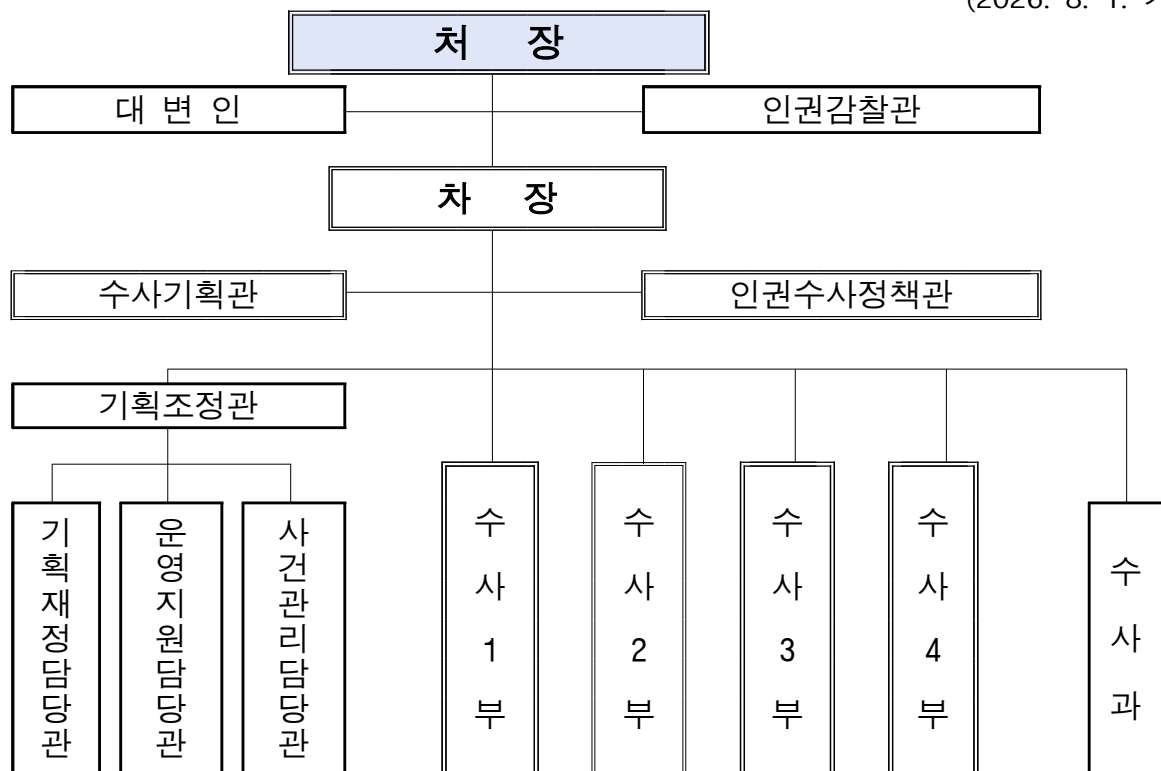
I. 개 관

1. 조직 및 정원

2026년 8월 1일 기준으로, 공수처는 4관 4부 5과로 구성되고 별도의 소속기관은 없으며, 정원은 총 85명이고 현원은 총 79명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도 (2026.8.1.기준)>

(2026. 8. 1. 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원 및 현원 현황(2026.8.1.기준)>

구분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처·차장 제외)	수사처수사관	행정직원	계
정원	1	1	23	40	20	85
현원	1	1	21	37	19	79

2.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112	112	0.0	100.0	-	-

□ 2025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세입예산은 없고 징수 결정액은 1억 1,200만원으로, 이 중 미수납금액 없이 전액 수납 완료 하였음.

-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명예퇴직수당 반납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59-596), 수사관 채용 응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사건기록열람등사 수수료 등 기타 잡수입(69-691)임.

【 2025년도 세입결산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징수결정액(A)	수납액(B)	B/A(%)	
가산금 (58-581)	-	1	-	-	-	-
기타 재산이자수입 (54-546)	-	-	0.1	0.1	100	-
기타 경상이전수입 (59-596)	133	178	110	110	100	-
기타 잡수입 (69-691)	1	2	2	2	100	-
총 계	134	181	112	112	100	-

3.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세출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세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증·감 (△)액				
25,268	25,268	-	-	-	25,391	22,748	347	2,296

□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252억 6,8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이월 금액 1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253억 9,100만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6%인 227억 4,8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0%인 22억 9,600만원임.

□ 지출액 227억 4,800만원을 살펴보면,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정보화)와 공수처 운영 인건비가 164억 1,7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 중 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정보화): 94억 (41.3%)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8억 2,300만원 (3.6%)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2억 6,900만원 (5.6%)
- 공판활동지원: 1,900만원 (0.1%)
- 공수처 운영 인건비: 70억 1,700만원 (30.8%)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42억 2,000만원 (18.6%)

□ 불용액 22억 9,600만원을 살펴보면,

각 사업별 집행잔액 등으로 인건비 16억 700만원,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3억 8,100만원,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억 5,300만원,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정보화) 1억 1,200만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3,200만원, 공판활동지원 1,100만원이 각각 불용됨.

【 2025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18,274	25,268	25,268	22,625	89.5	29,695
1000 공수처 활동 계	7,446	12,103	12,103	11,503	95.1	16,100
1031 공수처 업무정보화 계	6,300	10,643	10,643	10,223	96.1	14,678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정보화) (1031-300)	3,933	9,788	9,788	9,400	96.0	13,354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1031-301)	2,367	855	855	823	96.3	1,324
1032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계	1,131	1,430	1,430	1,261	88.2	1,407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1,131	1,430	1,430	1,261	88.2	1,407
1033 공판활동 계	15	30	30	19	63.3	15
공판활동지원 (1033-301)	15	30	30	19	63.3	15

구분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7000 행정지원 계	10,828	13,165	13,165	11,122	84.5	13,595
7001 소속기관 인건비 계	7,160	8,659	8,659	7,017	81.0	8,995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001-100)	7,160	8,659	8,659	7,017	81.0	8,995
7011기본경비 계	3,668	4,506	4,506	4,105	91.1	4,600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1,667	1,933	1,933	1,861	96.3	2,171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50)	2,001	2,573	2,573	2,244	87.2	2,429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A)	2024년도(B)	증 감(A-B)	
			금 액	비 율
자 산	19,245	14,484	4,761	32.9 %
부 채	38	26	12	46.2 %
순자산	19,206	14,458	4,748	32.8 %

□ 2025회계연도말 자산은 192억 4,500만원으로 2024회계연도말 대비 47억 6,100만원 증가함.

- 금융자산은 퇴직연금운용자산 관련 기타의기타금융자산 증가로 전년 대비 3,700만원 증가함.
- 일반유형자산 중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이 신규 취득으로 9억 1,700만원 증가함. 구축물, 집기 및 비품 등 기타 유형자산이 신규 취득 등으로 7억 7,500만원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 등으로 7억 6,800만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700만원 증가함. 무형자산 중 소프트웨어가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하여 14억 600만원 증가하였으나, 상각 등으로 39억 400만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24억 9,800만원 감소함.
- 기타자산은 선급비용 700만원 감소 및 선급금 63억 500만원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62억 9,800만원 증가함.

□ 2025회계연도말 부채는 3,800만원으로 2024회계연도말 대비 1,200만원 증가함.

- 차입부채는 주로 운영비 관련 기타의미지급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800만원 증가함.

- 충당부채는 주로 소송충당부채 증가로 전년 대비 400만원 증가함.

□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말 순자산은 전년 대비 47억 4,800만원 증가한 192억 600만원임.

나. 재정운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A)	2024년도(B)	증 감(A-B)	
			금 액	비 율
I.프로그램순원가 ¹⁾	7,722	6,184	1,538	24.9 %
II.관리운영비 ²⁾	12,569	12,037	532	4.4 %
III.비배분비용 ³⁾	—	—	—	—
IV.비배분수익 ⁴⁾	217	9	208	2,311.1 %
V.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20,074	18,211	1,863	10.2 %
VI.비교환수익 등 ⁵⁾	—	—	—	—
VII.재정운영결과(V - VI)	20,074	18,211	1,863	10.2 %

□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200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6,300만원 증가함.

- 프로그램순원가 77억 2,200만원에서 관리운영비 125억 6,900만원을 가산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등 비배분수익 2억 1,7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재정운영순원가는 200억 7,400만원임.

- 한편, 2025회계연도에는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대비 15억 3,8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증가 등이 반영된 것임.

1) 프로그램총원가(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사업비용에 해당함.

2)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의미함.

3)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비용임. 비배분비용의 예로는 일반유형자산의 처분손실,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자금의 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4)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임. 비배분수익의 예로는 일반유형자산의 처분이익,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자금대여로 인한 이자수익 등이 포함될 수 있음.

5)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함.

다. 재정운영(성질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A)	2024년도(B)	증 감(A-B)	
			금 액	비 율
수익합계(a)	217	9	208	2,311.1 %
I.이전수익	-	-	-	-
II.국가운영수익	217	9	208	2,311.1 %
비용합계(b)	20,291	18,220	2,071	11.4 %
III.이전비용	2	2	-	-
IV.국가운영비용	20,288	18,218	2,070	11.4 %
재정운영결과(b-a)	20,074	18,211	1,863	10.2 %

□ 2025회계연도 수익은 2억 1,700만원, 비용은 202억 9,100만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00억 7,400만원임.

- 수익은 국가운영수익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등 증가로 전년 대비 2억 800만원 증가함.
- 비용은 국가운영비용이 감가상각비 14억 1,800만원 증가 및 용역비 등 기타국가운영비용 6억 5,200만원 증가로 전년 대비 20억 7,000만원 증가함.

라. 순자산변동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A)	2024년도(B)	증 감(A-B)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14,458	13,263	1,195	9.0 %
II. 재정운영결과	20,074	18,211	1,863	10.2 %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24,823	19,406	5,417	27.9 %
IV. 조정항목	-	-	-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9,206	14,458	4,748	32.8 %

- 2025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은 144억 5,800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200억 7,400만원이며, 재원의조달및이전은 국고수입 및 기타이전수익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54억 1,700만원 증가한 248억 2,300만원임.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조달및이전과 조정 항목을 가산한 금액인 기말순자산은 192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4,800만원 증가함.

마. 현금흐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A)	2024년도(B)	증 감(A-B)	
			금 액	비 율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340	-	8,340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340)	-	(8,34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IV. 현금의증감(I + II + III)	-	-	-	-
V. 기초의현금	-	-	-	-
VI. 기말의현금(IV + V)	-	-	-	-

□ 2025회계연도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83억 4,000만원으로,

-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은 주로 국고수입으로 인한 유입이 반영되어 228억 6,000만원이고,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주로 운영비 및 외주용역비 등 지급이 반영되어 145억 2,0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83억 4,000만원으로,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주로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선급금 지급이 반영되어 83억 4,000만원임.

Ⅱ. 검토의견

◆ 총괄적 검토 ◆

1. 내부 감찰 실효성 제고 통한 조직기강 확립 필요

□ 포렌식 입찰 비위 의혹 사건 및 보석의견서 미제출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부 감찰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과정에서 공수처 소속 수사관 4명이 비위를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6년 7월경, 3명에 대하여 파면,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정직 3개월)로 각 의결하였음. 또한, 공수처의 형사고발에 따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임.

이 사안은 2025년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포렌식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뇌물죄 관련 사안임.⁶⁾

한편, 공수처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던 사건(경무관이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의류업체 대표인 사업가 김씨 등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업가 김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 1심 판결로 구속수감된 사업가 김씨는 서울고등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김씨 보석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

6) 박진산, 2026. 3. 17., 공수처, ‘입찰 비위’ 수사관 3명 뇌물 혐의로 경찰 고발,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9658.html

했지만 공수처는 의견서 미제출에 이어 보석심문에도 담당 검사가 출석하지 않았음.

공수처는 법원이 보낸 보석 청구 관련한 서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 담당 검사는 김씨가 석방된 이후에야 뒤늦게 보석 청구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임. 공수처는 문서 수발 직원의 실수로 법원의 의견서 제출 요청과 보석심문 일정 등의 문서가 수사부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음.⁷⁾

공수처는 위 두 사건에 대한 감찰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대한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감찰 중인 사항으로 감찰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의견임.

□ 내부 감찰기능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조직기강 확립 필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수사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이 요구됨. 따라서 공수처는 조직 내부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감찰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공수처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입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7) 정진우, 2026. 6. 10., 공수처 ‘부패범죄 첫 실행’ 홍보하더니...의견서 미제출로 뇌물 공여자 석방,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5679>

비위 의혹이 제기되어 자체 감찰 결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및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재판 절차에 차질을 초래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내부 복무 관리와 사건관리 체계의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음.

공수처는 포렌식 장비 입찰 비위 사건을 계기로 감찰 및 복무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러한 사례는 내부 통제체계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최근 공수처 인권감찰관실의 감사 및 감찰실시 현황을 보면 4개년 동안 11번의 직무감찰 및 0번의 회계 감사가 이루어짐.

〈 직무감찰 · 회계감사 · 일상감사 실시 현황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직무감찰	2	4	3	2	11
회계감사	—	—	—	—	—
일상감사	18	18	26	29	91

자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기관 규모가 비교적 작고 독립성을 보장받는 조직이라는 특성상 외부 통제에 앞서 내부 감찰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 그러나 현재 감찰업무⁸⁾는 조직 및 인력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예방적 감찰, 상시 복무점검, 이해충돌 방지 및 공직윤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8) 26년 6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감찰관실은 인권감찰관, 행정직, 검찰직,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될 경우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는 물론 기관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 감찰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상시적인 감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계약·조달 분야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 정기적인 복무점검,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내부 통제 및 재발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직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수처는 내부 감찰기능이 단순한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기구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감찰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찰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성과지표 실질화 필요

□ 공수처 대표 성과지표

「국가재정법」 제85조의6⁹⁾제1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 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 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된 성과목표 및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공수처는 2024년부터 “디지털 수사 및 정보화체계 이용 만족도”를 대표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작성하고 있음.

9)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생략)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 22	' 23	' 24	' 25	' 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도 (단위: %)	목표	31	-	-	-	-		(교육 이수 1회 X 인원수)+ (교육 이수 2회 X 인원수)	교육 공문 및 보고자료를 통한 실적 집계
	실적	23	-	-	-	-			
	달성도 (%)	74.2	-	-	-	-			
②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의뢰 고객만족도 (단위: 점)	목표	65	87	-	-	-		(매우 만족 수x100)+(만족 수x75)+ (보통 수x50)+ (만족 수x25)+ (매우 불만족 수x0)	디지털 포렌식 이용한 수사처 검사·수사관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37.8	91.9	-	-	-			
	달성도	135.1	105.6	-	-	-			
③ 사건처리율 (단위: %)	목표	신규	75	-	-	-		본년 사건(공제 결정+진정 처리) 건수/본년 사건 (공제+진정) 접수 건수	'23년도 사건 (공제, 진정) 의 접수 및 처리 건수를 각각 집계한 KICS 자료
	실적	신규	86.3	-	-	-			
	달성도 (%)	신규	115.1	-	-	-			
② 디지털 수사 및 정보화체계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87	88	88	'25년 KICS 고도화 사업 진행 중으로 시스템 변동성이 클것으로 예상되어 '25년 수준으로 목표 설정	이용 만족도 총점 : 항목별 만족도 평균 점수(리커트 척도 환산)/항목 개수 * 리커트 5점 척도 (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공수처 KICS 및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이용한 공수처 직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신규	신규	88.5					
	달성도	신규	신규	101.7					

자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성과지표와 기관 임무와의 연계성 및 객관적 측정방식 제고 필요

기획예산처의 2026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¹⁰⁾상 성과목표체계는 “프로그램 목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성과에 대해, ‘성과 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프로그램 목표 설정 시에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규정과 관계법령에 제시된 역할 등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인 내용으로 설정(법 제85조의6 제2항)하도록 하고 있음.

〈「202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의 성과지표 설정 방법〉

4.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를 원칙으로 결과·정량 지표로 설정
-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1) 성과지표의 개념 및 설정 목적

- (개념) 프로그램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measure)할 수 있는 잣대로써 성과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
- (목적) 프로그램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고 관리(법 제85조의6 제3항)
 -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이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
 - 재정사업의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예산사업 추진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

(2) 프로그램 성과지표 설정 기본방향

- (지표설정) 원칙적으로 1프로그램 1성과지표로 설정
 - * 프로그램 목표수가 1~2개인 경우로서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부처는 프로그램 내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조정 가능
(단, 프로그램의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핵심성과, 중요도, 영향력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

10) p.40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참조

- (정보화) 프로그램 내 ①정보화 사업 예산비중*이 2/3 이상이거나, ②핵심 정보화 사업**이 포함되어 프로그램 성과와 밀접할 경우, 관련 성과지표 반영

- ☐ 다부처 연계·협업이 요구되는 사업*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협업과제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프로그램 성과지표로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지표를 설정

(3)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시 고려사항

- ☐ (측정방법)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
 - 목표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
- ☐ (목표치) 목표치는 프로그램 내·외부 환경변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설정 근거를 명확히 작성

공수처의 경우 대표 성과지표를 ‘디지털 수사 및 정보화체계 이용 만족도’로 설정하여, 공수처 KICS 및 디지털포렌식 서비스를 이용한 공수처 직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음.

이에 관하여 공수처는 공수처의 경상경비를 제외한 수사활동 프로그램 사업 중 정보화 예산 비중이 2/3를 초과하여 ‘정보화체계 이용 만족도’를 대표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는 의견임.

그러나 이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척결’이라는 기관의 설치목적과 거리가 있고, KICS 및 디지털포렌식 서비스를 사용한 직원 만족도는 기관의 역할과 관련성이 낮으며, 프로그램 추진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대표하는 지표로 보기 어려움. 오히려 사건처리율 등 수사 실적에 대한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하는 방안이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수처는 예산 전략목표 설정의 적절성, 프로그램 목표 설정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등을 재검토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실질적·체계적 성과목표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성과지표(사건처리율 등)를 복수로 설정하거나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 달성 측정이 가능한 성과지표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3. 공수처 업무 안정성을 위한 인력확보방안 마련 필요

□ 결산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인력정원 및 현원 현황을 보면, 2026년 8월 기준 검사는 정원 25명에 현원 23명, 수사관은 정원 40명에 현원 37명, 행정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계
정원	25	40	20	85
현원	23	37	19	79
결원	△ 2	△ 3	△ 1	△ 6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파견인력 현황을 보면, 2026년 8월 기준 수사인력 3명, 행정인력 17명 등 총 20명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인력 현황〉

구분	파견기관	인원 수
수사인력(3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2명
행정인력(17명)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11명
	공공기관	3명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행정직원 인력증원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필요

현재 공수처의 행정직원 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명 이내로 법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행정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운영 중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2조(수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수사처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수사처수사관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정원 중 1명(서기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행정안전부,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인사혁신처,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처장은 파견규모·직급·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3] 직원 정원표(제12조제3항 본문 관련)

직원 정원표(제12조제3항 본문 관련)

총계	20
일반직 계	20
고위공무원단	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비서)	1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주사	2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시설주사	2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기록연구사	1
전문경력관 나군	1
비고	
1. 직원 정원 중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에 기록연구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기록연구사 1명을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으로 대체하거나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직원 정원 중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 100명 이하로 운영되는 경우 행정주사 1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 특검 또는 일반적인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조직과는 달리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여 국회, 예산, 인사 등 독립적인 행정 소요가 존재함에도, 타 수사기관과 비교하여 검사정원 대비 검사 외 인력 정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의 수가 실제 소요대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찰청의 검사외 정원 비율 비교>

기관*	검사정원	검사외인력 정원	검사대비 검사외 인력 비율
대검찰청	77명	535명	6.95배

서울중앙지검	267명	868명	3.25배
대전지검	73명	222명	3.04배
부산지검	84명	301명	3.58배
광주지검	74명	249명	3.36배
춘천지검	22명	78명	3.54배
검찰청 전체	2292명	8358명	3.64배
공수처	25명	60명**	2.4배

* 지검 및 지청 자료는 일부만 무작위 기재하였음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자료: 2025년 검찰연감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상 기관의 기획·관리는 그 연속성을 위해 정원 내 직원이 담당하고 집행·실무는 파견자 등 정원 외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수처는 행정직원 정원 20명 중 처장 비서관 1명 및 간부 5명(기획조정관, 인권감찰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을 제외한 14명만 조직유지기능 실무에 투입될 수 있어 인사, 회계, 조직 등 기관유지를 위한 주요기능을 다수의 파견인력이 담당하고 있는데, 파견인력은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공수처 기관유지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으로 보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요 조직기능의 담당 현황〉

단위업무	주요 세부 업무	담당자
인사	검사 인사	소속직원(행정6)
	수사관 인사	파견(지자체6)
	공무직 인사	파견(행정7)
총무	공사·물품·시설관리	파견(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정보화운영	파견(지자체6)
회계	관서·결산	파견(지자체6)
조직	직제·조직진단	파견(지자체5)
국회업무	국회협력	소속직원(수사5)
	국회대응·국제협력	파견(지자체6)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에 따라 2022년도에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보고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역량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는 조직·인사·회계 등 기관유지의 핵심기능 업무 담당자를 정원 내 인원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수처의 행정직원의 정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제21대 국회에서는 공수처의 행정직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¹¹⁾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인하여 모두 폐기되었고, 이후 제22대 국회에서도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0876호,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등¹²⁾이 다수 발의되었으며, 행정직원의 정원을 현행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4934호, 대안)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임.

이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기관유지를 위한 핵심업무를 정원 내 인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원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유연한 행정인력 확보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기관유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1) 의안번호 제2110857호 이수진의원안, 의안번호 제2111515호 송기헌의원안, 의안번호 제2118489호 권인숙의원안, 의안번호 제2124336호 권칠승의원안, 의안번호 제2124664호 소병철의원안

12) 의안번호 제2201405호 이성윤의원안, 의안번호 제2207942호 전현희의원안, 의안번호 제2210337호 윤준병의원안, 의안번호 제2210404호 최민희의원안

□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인력증원 방안 마련 필요

공수처의 수사처검사 정원은 25명인데 26년 8월 기준 현원은 23명이었으나 처장 및 차장을 제외한 실제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수사처검사의 인원은 총 21명에 불과함.

공수처법 제8조13)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임. 그런데 공수처 최초 출범 당시 검사로 임용되었던 1기 검사 13명 중 11명은 임기만료 전 퇴직하였고, 2명 중 1명은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연임에 실패하였는바, 결과적으로 1기 검사 13명 중 1명만이 연임하여 연임 비율이 7.7%에 불과하였음.

이에 따라 처장 및 차장을 제외한 현재 재직 중인 수사처검사 중 재직기간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3년 이상 재직자의 수는 6명에 불과하였고, 2년 이상 재직자의 수도 도합 4명에 불과하여 공수처 출범(2021년 1월 21일) 후 약 5년 5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처검사 중 정원 대비(23명) 2년 이상 재직자의 비율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수사처수사관의 경우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인데, 현원 38명 중 3년 이상 재직한 수사관의 수는 27명으로 정원(40명)대비 67.5%에 불과하였으며, 검사 및 수사관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퇴직자 수는 총 42명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10명이 넘는 인원인 퇴직하고 이는 정원(65명)대비 16%에 달하였음.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재직기간별 인원수〉

(단위: 명)

구분	0 ~ 1년	1 ~ 2년	2 ~ 3년	3년 이상	합계
검사 (처장·차장 제외)	4	7	4	6	21
수사관	3	2	5	27	37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최근 3년간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채용·퇴직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검사	채용인원	3	10	1	11	0	25
	퇴직인원	5	7	11	0	2	25
수사관	채용인원	11	4	6	2	1	24
	퇴직인원	8	3	7	1	3	22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와 같이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높은 퇴직률이 유지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어 수사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잦은 인력 공백으로 조직의 운영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존재함.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높은 퇴직률과 관련하여, 공수처는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경우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과는 달리 임기제로 운영되고, 특히 수사처검사는 연임이 3회로 제한되어 있어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음.

공수처의 설명과 같이, 검찰청 검사의 경우 「검찰청법」 제39조¹⁴⁾에 따라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을 뿐 별도의 연임제한은 없는 반면, 수사처검사의 경우 최대 9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바, 연임제한에 따른 신분의 불안이 수사처검사의 높은 퇴직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는 수사처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검찰청 검사와 같이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115호)¹⁵⁾이 발의된 바 있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의안번호 제2207942호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임.

따라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의 연임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수사처 검사의 연임제한에 따른 신분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검사 및 수사관의 채용기준 및 절차를 점검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건전한 내부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

14)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15) 현재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됨.

◆ 개별사업별 검토 ◆

4.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 결산개요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은 범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 역량의 강화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접수사 활동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은 14억 3,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4억 3,800만원인데, 이 중 12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5,300만원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430	8	—	—	1,438	1,269	16	153	1,407

□ 수사업무 통신요금 지급 개선 필요

공수처는 수사활동을 수행하는 검사 및 수사관의 업무상 통신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서 ‘수사업무 통신요금’을 집행하고 있음.

< 2025년 지급대장 중 발체 >

(단위: 백만원)

수사업무 통신요금 지급(1월)					
단위사업	목	세목	지급구분	지급액	수령인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전자자금 이체 지급	16,000	홍OO
				26,590	김OO
				30,000	김OO
				31,000	윤OO
				38,000	박OO
				38,000	이OO
				38,870	천OO
				40,000	박OO
				40,000	김OO
				40,000	권OO
				40,000	고OO
				40,000	고O
				40,000	곽OO
				40,000	손OO
				40,000	고OO
				40,000	황OO
				40,000	허OO
				40,000	탁OO
				40,000	최OO
				40,000	최OO
				40,000	최OO
				40,000	최OO
				40,000	천OO
				40,000	정OO
				40,000	정OO
				40,000	전OO
				40,000	장OO
				40,000	임OO
				40,000	이OO
				40,000	이OO
				40,000	이OO
				40,000	이OO
				40,000	이OO
				40,000	이OO
				40,000	윤OO
				40,000	오OO
				40,000	양OO
				40,000	심OO
				40,000	송OO
				40,000	손OO

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각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업무상 휴대전화 사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매월 일정액(4만원)의 통신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통상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물품의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일반적인 행정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비목으로서, 소속직원 개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기 위한 비목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150 참조)
바. 자산취득비, 공사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세한 내용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 참고)

공수처의 수사업무 통신요금 집행방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통신요금을 일반수용비(210-01)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과목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요금은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에 해당함. 따라서 수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통신요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비목의 구

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예산과목은 지출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바, 통신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둘째, 통신요금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통신요금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직원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제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요금에 근거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업무용 통신비 발생액이나 사용 내역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개인에게 정액의 수당성 경비를 지급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음.

셋째, 공수처가 지급하고 있는 수사업무 통신요금의 실질이 수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특정업무경비(250-03)를 활용하는 것이 예산비목의 취지에 보다 부합할 수 있음.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로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수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경비의 실질은 일반적인 기관 통신요금보다는 수사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실경비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부서 소속 검사 및 수사관에게 업무상 통신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계속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기보다는 특정업무경비의 지급대상·지급요건 및 집행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비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즉, 실제 발생한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기관이 부담하는 성격이라면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에서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수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실경비를 포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라면 특정업무경비(250-03)의 지급대상 및 집행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해당 비목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수처는 수사업무 통신요금의 지급근거와 실제 집행방식을 재검토하고, 통신요금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또는 특정업무경비 등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집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례적 집행부진에 대한 집행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공수처는 2021년 1월에 출범한 이후 매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집행률은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각 집행률은 2022년 49.9%, 2023년 68.8%, 2024년 72.1%, 2025년 88.2%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나 예산현액 대비 90% 미만의 집행률이 지속되고 있음.

〈연도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현액	2,363	2,015	1,567	1,438
집행액	1,181	1,388	1,131	1,269
이월액	45	—	8	16
불용액	1,137	627	428	153
집행률	49.9%	68.8%	72.1%	88.2

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구체적으로 2025년 세부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내역은 포상금 0%, 구호 및 교정비 0%, 기타보전금 37.5% 국내여비 52.1% 등으로 나타남. 공수처는 집행부진 사유로 특별검사에 대한 인력 차출로 인하여 수사 인력 부족 및 수사에 따라 집행 소요가 발생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인력 보강을 통해 집행률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기능·비목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25년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430	—	1,438 (이월 8)	1,269	88.2%
－ 공공요금 및 제세	14	—	14	10	71.4%
－ 임차료	45	—	45	34	75.5%
－ 국내여비	138		138	72	52.1%
－ 특정업무경비	418	—	418	378	90.4%
－ 포상금	5	—	5	—	0%
－ 기타보전금	8	—	8	3	37.5%
－ 구호및교정비	1	—	1	—	0%

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러나, 집행률이 0%인 포상금·구호 및 교정비, 37.5%의 기타보전금은 수사 인력의 보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니므로 불용 포상금을 공익신고에 대한 홍보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 포상금의 인상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범죄등은 권력형 비리범죄로 상호 간의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고 범행이 매우 은밀히 이루어지는바 내부고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 및 내부고발에 대한 보상이 필수적인데, 공수처의 포상금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표 1]에서 최대 1억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포상금을 공익

신고자 보호법의 보상금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¹⁶⁾함.

이에 반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별표 1]에서는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금의 경우 상한 없으며 공수처의 포상금에 비하여 최대 10배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수처도 포상금 지급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수처 포상금과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액 비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상 포상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상 보상금	
벌금, 몰수 등 재산형 부과 금액 기준	지급액 기준	보상대상가액 ¹⁷⁾	산정기준
1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천만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5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2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천만원 이하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20억원 초과	1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8조(포상금)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저지른 사람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으면 ...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7) “보상대상가액”이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함.

□ 전용, 이월 등의 집행상 미비점 개선 필요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은 수사활동에 필요한 각종 경비와 수사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14억 3,800만원임.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공수처는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함께 예산의 세목조정 및 전용,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3개년 이·전용 및 세목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23	세목변경 (2023.7.1 1.)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일반수용 비 (210-01)	20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일반용역비 (210-14)	빅데이터 연관분석 교육 용역을 위한 세목 변경
2024	전용 (2024.4.1 1.)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국내여비 (220-01)	110	정보화체계구 축 및 운영 (정보화) (1031-300)	일반연구비 (260-0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2 단계 구축을 위한 ISMP 사업 추진 예산 필요로 전용
	전용 (2024.9.4.)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자산취득 비 (430-01)	42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정보화) (1031-301)	자산취득비 (430-01)	포렌식장비 취득비 부 족으로 인한 전용
2025	세목조정 (2025.5.2 0.)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일반수용 비 (210-01)	20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일반용역비 (210-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홍보영상 촬영을 위한 예산 필요로 조정
	세목조정 (2025.6.9.)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일반수용 비 (210-01)	9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일반용역비 (210-14)	검사 교육영상 제작을 위한 예산 필요로 조정
	세목조정 (2025.8.2 1.)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일반수용 비 (210-01)	19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일반용역비 (210-14)	리더십 교육 사업추진방식 변경으로 조정

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첫째, 반복적인 세목조정 및 이·전용은 당초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정확성이 미흡하였음을 나타내는 측면이 있음.

예산의 이용·전용 및 세목조정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러한 예산 조정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 소요예산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최근 4개년 이월 현황을 보면,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 19억 7,000만원 중 4,500만원을 이월하였고, 2024년도에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5년도 800만원, 2026년도 1,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최근 4개년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월사유
	본예산	추경		
2023	1,970	1,970	45	이월 사유 : 「국가재정법」 제48조18)에 따른 사고이월(45백만원)
2024	1,719	1,719	—	—
2025	1,430	1,430	8	이월 사유 : 준공일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8백만원)
2026	1,407	1,407	16	이월 사유 : 준공일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16백만원)

18)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생략)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계약 체결 시기 및 용역 수행기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최근 4개년 중 3개 연도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2025년과 2026년에는 동일하게 ‘준공일 미도래’를 사유로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발주 및 사업 착수 시기가 적절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회계연도 후반기에 추진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기한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예산의 적기 집행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공수처는 사업별 추진일정과 계약 기간을 예산편성 및 연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5.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7011-250)

□ 결산개요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도 예산현액은 26억 6,800만원이고, 이월예산은 5,500만원이며, 이 중 23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억 5,400만원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573	115	△20	—	2,668	2,359	55	254	2,429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예산비목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및 반복적인 비목정정 개선 필요

공수처는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7011-250) 사업에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우편요금, 차량유지비, 시설·장비 운영비, 피복비 등의 경비를 집행하고 있음. 그런데 2025회계연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경비의 경우 해당 지출의 성격에 부합하는 세목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용비(210-01)에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됨.

공수처는 등기우편 반송료를 공공요금 및 제세(210-02)가 아닌 일반수용비(210-01)에서 집행하였고, 유류비 및 시설·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각각 연료비(210-06), 시설장비유지비(210-09) 등의 성격에 부합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 방호업무 근무복 구입비 또한 피복비(210-03)가 아닌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였음.

〈2025년 공수처 지급부 중 발체〉

(단위: 원)

세부 사업명	세목	일자	지급사유	사용가맹점	지급액
○ 공수처 운영 기본 경비 (비총액)	일반 수용비 (210-01)	4.25.	방호 근무복 구매비용 지급	주식회사 벨로벨라	1,800,000
		6.20.	공공요금 납부(2025년 6월)	(주)SK Broadband	101,200
				(주)SK텔레콤	215,000
				(주) KT	275,000
					275,000
					322,850
					473,000
				(주)SK Broadband	519,450
					1,148,400
		6.25.	등기우편 반송료 (6월 22일 청구분)	우정사업본부(우체국)	12,000
					14,7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신문구독료”를 일반수용비(210-01)가 아닌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에서, “관용차량 세차비용” 등을 일반수용비(210-01)가 아닌 연료비(210-06)에서 각 선지급 후 비목정정을 통해 일반수용비(210-01)로 전환하였음.

〈2025년 공수처 지급부 중 발체〉

(단위: 원)

세부 사업명	사후정정 세목	지급 세목	일자	지급사유	사용가맹점	지급액
○ 공수처 운영 기본 경비 (비총액)	일반 수용비 (210 -01)	공공요금 및 제세 (210 -02)	9. 24.	신문 구독료	조선일보 동서과천지국	1,050,000
					(주)중앙일보	300,000
					(주)중앙일보대일리	120,000
					(주)매일경제신문사	200,000
		연료비 (210 -06)	9. 24.	세차 비용	웰빙카케어, 에이치디 현대오일뱅크 등	378,500
			9. 24.	하이패스카드 충전비	에스엠하이플러스 주식회사	750,0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째, 지출의 성격에 부합하는 세목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과목별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의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에 정하여진 목적과 과목에 따라 경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각 세목은 해당 경비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 특히 일반수용비는 기관의 기본적인 사무수행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 인쇄비 및 각종 수수료 등 일반적인 행정 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세목이므로, 다른 세목에서 집행하도록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비까지 일반수용비에서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둘째,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다른 세목에서 우선 집행한 후 사후적으로

비목을 정정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이 충분히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비목정정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회계처리 착오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목별 실제 소요를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하였거나, 집행단계에서 세목별 예산 잔액 및 향후 소요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집행방식은 국회가 예산 심의·확정 과정에서 정한 세목별 재정소요와 실제 집행내역 간의 차이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결산상 세목별 집행실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하여 공수처는 지출이 필요한 당시 상황에서 관서운영경비 해당 비목에 교부 자금이 부족하였고, 자금 교부 후 지급과목정정결의를 통하여 올바른 비목으로 지출 처리를 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서운영경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임.

따라서 공수처는 ① 우편요금, 유류비, 시설·장비 운영비 및 피복비 등 지출의 성격이 명확한 경비는 해당 성격에 부합하는 세목에서 집행하고, ② 일반수용비 내 세목 간에 지출용도에 맞지 않는 임의적인 지출 후 사후적으로 비목정정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③ 세목별 집행실적과 비목정정 내역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실제 소요액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고용의무 준수 노력 필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천분의 36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내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을 제외한 행정직원의 정원은

총 20명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명의 장애인을 채용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아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내역〉

사업	세목	연도(년)	납부액(원)
공수처 운영 기본 경비(비총액) (7011-25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023	22,284,080
		2024	23,403,150
		2025	23,987,01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현재 행정직원 정원 20명을 모두 채용한 상태여서 장애인을 추가 채용할 수 없어 의무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공수처는 현재 수사처 수사관 중 1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수사처 수사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 아니어서 의무고용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및 행정직원의 인원이 법정되어 있어 실제 소요인력에 비해 정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부득이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이 법률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이므로, 공수처는 추후 행정직원의 신규채용 소요 발생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수처는 별도 예산 편성 없이 해당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공수처의 행정직원이 전원 채용 완료된 관계로 이후에도 상당기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추후 예산편성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25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중 세목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세목변경일	목-세목코드 ~에서	목-세목코드 ~으로	금액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50)	2025. 1. 17.	일반 수용비 (210-0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4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한, 공수처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연례적 집행 사업임에도 회계연도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2025. 1. 17.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세목변경을 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시 적정규모를 파악하여 세목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2024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치결과

1.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현황

요 구 수 준						합 계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	—	—	1	5	—	6

2.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조 치 결 과			합 계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 미이행	
6	—	—	6

3.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상세내역

가. 조치완료 사항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4년 예산 불용률은 11.6%인 반면, 국가 전체 예산의 평균 불용률은 약 2% 내외인바, 공수처의 예산 불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공판활동지원 예산의 불용률이 50%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공수처는 매년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 추계 정확성을 기하여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주의	○ 예산집행 지원단을 상시 운영하여, 집행 실적 점검·부진사업 애로사항 해소·대체사업 발굴 등을 통해 사업 부서를 지원하고 집행 관리를 개선해나가겠음 ○ ‘26년 예산 편성 시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률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제도	○ 정책연구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25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 연구용역 절차 지연으로 일반연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200만원을 불용(집행률 32%)하였고, 정책연구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500만원을 이월하고 1억 1,000만원을 불용(집행률 29.5%)하였음 ○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해 세목변경을 하고 있음. 또한, 연구용역 미발주 등의 상황에서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16차례 진행하였으며, 모든 심의를 서면심사를 통해 집행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개의요건인 ‘위원 출석’을 서면으로 대체한 것임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구용역 과제 선정 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규정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것	개선	정책연구과제를 모두 상반기에 선정하고 신속하게 용역계약 체결하였음 * ‘25년 정책연구비 불용률 7.0% ○ ‘26년에도 연구용역 절차 지연 없도록 충실한 기본계획을 마련 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보완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 하여 규정 취지에 맞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지적사항] ○ 수사·공소 관련 각 위원회의 2024년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검찰위원회를 제외한 수사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 공보심의위원회 등 수사 관련 심의위원회의 집행률은 14.5%, 공소심의위원회의 집행률은 20.8%임 ○ 2024년 회의 개최실적은 심의 계획인 30회와 달리 개최횟수가 수사심의위원회 1회, 영장심의위원회 1회, 공보심의위원회 4회, 검찰위원회 2회, 감사징계위원회 2회로 도합 10회(약34%)에 그쳤음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공소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최 계획수준을 수정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제도 개선	○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 및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25년 9월 기존의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를 통합·개편하였으며, 최근 3개월간 총 3회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26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약 9,000천원이 감액된 2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를 통해 계획대로 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 및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제도	○ ‘25년 검사 결원 11명(5월 6명, 7월 1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검사 임명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수처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고 인건비 예산이 불용되었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2년 이후 총 6,007건의 사건접수 중 공소 제기는 4건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3명이 퇴직하는 등 높은 퇴직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실적대비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실적대비 과도한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	개선	○ 12월 4명)을 충원하여 검사정원 25명 모두 충원 완료하였음 * 공수처 출범 후 최초 검사정원 25명 모두 충원 ○ ‘25년 수사관 결원 2명(11월 1명, 12월 1명)을 충원하여 수사관정원 40명 모두 충원. 다만, ‘25.12.22. 수사관 1명이 검사 임용되어 수사관 결원 1명 발생하였으나, ‘26년 1월 채용 진행 예정임 ○ ‘25년 검사 및 수사관 퇴직자 없음 ○ 향후 공수처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검사 및 수사관의 신분불안 해소책을 마련하여 우수 인력 및 장기재직 방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법적·제도적 보완 외에도 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을 낮추기 위하여 인사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2일
[지적사항] ○ 소형 복합기 구매 계약이 2023년 3월 30일에 체결되었음에도,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고속으로 스캔 가능한 OCR스캔시스템을 1대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으나 전액 불용함 * 광학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은 자동화된 데이터 추출을 사용하여 텍스트 이미지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빠르게 변환하는 기술임 ○ 공수처는 특정범죄신고자, 증인, 내부고발자 등 신변보호관련 업무위탁비 및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각 400만원, 4,650만원 편성하였으나 1건도 집행하지 않음. 내부고발 보호제도에 대한 별도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	제도 개선	○ ‘25년 7월 OCR스캔시스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배정된 임차료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예산 운영 시 필요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편성하겠음 ○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용역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비실명 내부고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 ‘공수처법 대상범죄 비실명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도입 등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추진(‘25.7.9.~12.5.)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26년부터 「비실명 내부고발 신고 시스템 및 운영센터 설립」을 위한 인력·예산·시설·홍보 등 종합추진 계획 마련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을 최소화하고,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지적사항] ○ [지적사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의 국내여비 예산 1억 1,000만원을 전용하였음 - 계획에 없던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해당 예산을 편성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예산심의 및 통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제도 개선	○ ‘25년 예산 편성 요구 시, 사전에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 후 예산 편성하여 목적 이외 집행되는 사례는 없었음 ○ 예산 편성 요구 시 철저히 사업 계획 수립하여 예산 편성 요구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0일